

군산시 공고 제2022-560호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사전적·확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에 대한 전대금지 규정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 3.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 063-454-4141, FAX : 063-454-603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어린이교통공원팀(063-454-4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수탁자는 위탁자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⑤ (생 략)</p> <p>⑥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안전체험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u>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u></p> <p>&lt;신 설&gt;</p> <p>⑦ (생 략)</p>	<p>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양도</u>----- -.</p> <p><u>⑦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u></p> <p>⑧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22-561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자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3년 연장(§17)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제92의2)
개정 전	개정 후
(택 1) 150원~500원 (병행) 300원~1,0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택 1) 250원~800원 (병행) 500원~1,6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 에서 “2025년 6월 30일” 로 3년 연장하고(안 제2조제1항)

- 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법률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안 제5조)
- 다. 종이 없는 납세고지 정착을 위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0조).

구 분	현 행	개 정(안)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	300원	8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병행 신청	1,000원	1,600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제9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법무의정),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마. 입법예고기간 : 2022. 3. 15.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 063-454-2403, FAX : 063-452-816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  
 -----  
 -----  
 -----  
 -----  
 -----  
 ----- 2025년 6월 30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  
 -----  
 -----  
 -----  
 -----  
 -----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생략)
-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② (생략)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
-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1. -----  
-----  
----- 800원
  - 2. -----  
-----  
----- 1,600원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3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발생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액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

구 분	현 행	개 정(안)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	300원	8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병행 신청	1,000원	1,600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2021년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46명) 현황 : 5,228,780원
-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추가 발생 비용 : 15,190,900원

[2021년 공제건수 기준 비용 산정]

(단위 : 원/건)

구 분	2021 공제건수	현행(2021)		개정(2022~)		증가액 (비용)
		공제액/건	공제액	공제액/건	공제액	
총 계	29,830		10,880,300		26,071,200	15,190,900
자동이체	7,270	300	2,181,000	800	5,816,000	3,635,000
전자고지	19,801	300	5,940,300	800	15,840,800	9,900,500
자동이체+ 전자고지	2,759	1,000	2,759,000	1,600	4,414,400	1,655,400

###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세무과장 김성희
연락처	(063) 454 - 240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2-562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개별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군산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무 위임한 지방도의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관리조례를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 공유재산 운영상황 등 공개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2.18., 2021.8.17.제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조례 정비

## 2. 주요내용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2항)

- (현 행)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 1호 ~ 8호
-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 1호 ~ 9호 (9호 신설)  
9.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문 신설

###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 행)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개정안)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1항 ~ 제2항 (제2항 신설)  
②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문 신설

###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제4항 5호)

- (현 행)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4항 5호 가목~다목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개정안)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4항 5호 가목~라목 (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1.8.17.)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문 개정 및 신설

###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82, 팩스 063-452-8161)
- 전자우편 : with223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제5호다목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를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제4항 제5호 라목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  
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의 유효기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lt;신설&gt;</p> <p>③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같음할 수 있다.</u></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 ③ (생략)</p> <p>④ 영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lt;후단신설 2021.05.17.&gt;</p> <p>1. ~ 4. (생략)</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나. (생략)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신설>

6. (생략)

⑤ (생략)

5.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  
-----  
-----  
-----

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2-563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용어 정비 (안 제18조 제2항)

②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말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조문 개정

##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82, 팩스 063-452-8161)
- 전자우편 : with223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시행규칙 제 호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2항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u>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18조(가격평정) ①(현행과 같음)</p> <p>② ----- -----<u>감정평가법인등</u>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 다)</u>의 ----- -----</p>

군산시 공고 제2022-564호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규칙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 「지방재정법」 개정(2021.01.12.), 「지방보조금법」 제정(2021.01.12.)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약칭 오류 정비 (안 제4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나. 「지방보조금법」 제정 사항 반영 (안 제4조제2항)
  -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개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다. 단순 문구 수정 (안 제6조)

### 3. 의견제출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315, FAX : 063)452-8157 전자우편 : rkgml488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전화 454-2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7조의2**” 를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의2**”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를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로, “**실시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에**” 를 “**규정을**”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u>법 제 37조의2</u>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2조의3 제2항에서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② <u>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p> <p>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u>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u>지방 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u>----- ----- -----.</p> <p>&lt;후단 삭제&gt;</p> <p>② <u>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u>----- ----- 한다.</p>
<p>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p> <p>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u>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u> 따른다.</p> <p>② (생략)</p>	<p>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p> <p>① ----- ----- <u>규정을</u> -----.</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연락처	063-454-2315



### 군산시 공고 제2022-566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5. 11. 10.

#### 3. 의견제출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316, FAX : 063)452-8157 전자우편 : bluechoty@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전화 454-2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전단 중 “12. 31.” 를 “11. 10.”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2. 31.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 ----- 11. 10.-- ----. ----- ----- ----- ----- ----- ----- ----- --. ---.</p>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연락처	(063) 454 -2316

군산시 고시 제2022-25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4.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7건, 폐지 4건, 분할 2건, 합병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3.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옥곡길 2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옥곡길 28	20110729		20070528	대명리 대명마을을 옥과 같다하여 옥실 또는 옥곡이라 칭함	
건물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옥곡길 2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옥곡길 34-2	20220302		20070528	대명리 대명마을을 옥과 같다하여 옥실 또는 옥곡이라 칭함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89		20220302	건물신축	20120925	발산의 옛 이름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41		20220228	건물신축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39-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8-10 (미장동)	20220225	건물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19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526-13	20220224		20100125	나포면 서포, 주곡, 옥곶리에 십자들이 존재하여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93-8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길 80 (산북동)	2022022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설립5길 71-4 (소룡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18 (소룡동)	20220223	건축물 대장상 1536-17번지 합병으로 인한 건물군 생성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동양안전물산
건물번호 합병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18 (소룡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18 (소룡동)	20220223	건축물 대장상 1536-17번지 합병으로 인한 건물군 생성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동양안전물산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305-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156-4	20220223		20120925	발산의 옛 이름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86-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1길 28-7 (미장동)	20220221		20150127	도로 신설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80-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문화길 53-13	20220225	건물신축	20070528	통사리 문화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송풍동 925-3	전라북도 군산시 청소년 회관로 21 (송풍동)	20220225	건물신축	20100125	주변에 청소년회관이 있음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35-1		20220218	건물신축	20100125	주변에 옥구저수지가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5-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35-1	20220218	건물신축	20100125	주변에 옥구저수지가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389-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둔산2길 31	20220221	건물신축	20070528	어은리 둔산 마을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00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라로 137-16	20220217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 라함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449-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 42-8	20220216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00	20220215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00		2022021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2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망동1길 61-7	20220211		20110728	망동마을 명칭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 동 36-25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139-35 (비응도동)	20220210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영(방조 제의 북쪽위치)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000-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길 16-6	20220211	건물신축	20070528	어은리 어은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6-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987-5	20220211	건물신축	20090710	성산면 성덕리에 금강철새조망대가 위 치, 지형명칭 반영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 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북로 512 (오식도동)	20220211	건물신축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영(방조 제의 북쪽위치)	

군산시 고시 제2022 - 3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7-00006호 (2022. 3. 2.)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섬영어조합법인(전라북도 군산시 장미 1길 25, 1호(장미동))
- ③ 허가목적 : 신축부지 진출입로, 여과기 및 물탱크설치, 해수유입관로 매설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46-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24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0. 12. 23. ~ 2023.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3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경남기업(주)
  - 나. 대 표 자 : 박석준
  - 다. 주 소 : 충남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3월 4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39-6 외 53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40,430.3m<sup>2</sup>
  - 라. 건축면적 : 12,444.2762m<sup>2</sup>(건폐율 : 30.78%)

마. 연 면 적 : 152,569.5921㎡ (용적율 : 249.69%)

바. 건축규모 : 지하 5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동 외, 874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874				
84A	민영주택	626	84.9665㎡	28.3813	113.3478	
84B	민영주택	70	84.9895㎡	28.7908	113.7803	
84C	민영주택	41	84.9856㎡	28.0581	113.0437	
84D	민영주택	56	84.9599㎡	30.5840	115.5439	
84E	민영주택	78	84.9461㎡	28.3706	113.3167	
105	민영주택	3	105.8613㎡	39.7321	145.5934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69,589,847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06월 20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9	조촌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	증)42,383.8	42,383.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59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42,383.8	·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2	1120	8	국지 도로	60	소로 1-105	중로3-7	일반 도로	-	금회	노선 신설
기정	대로	1	4	35~41	주간선	6,314	조촌동 대로1-3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변경	대로	1	4	35~41	주간선	6,314 (48)	조촌동 대로1-3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폭원 확장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545	조촌동 대로1-4	조촌동 중로2-25	일반 도로	조촌 택지	건고525 (‘67.7.25)	
변경	중로	3	6	12~18	집산 도로	545 (250)	조촌동 대로1-4	조촌동 중로2-25	일반 도로	조촌 택지	건고525 (‘67.7.25)	폭원 확장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690	조촌동 대로2-6	조촌동 중로3-6	일반 도로	조촌 택지	건고525 (‘67.7.25)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563	조촌동 대로2-6	조촌동 중로3-6	일반 도로	조촌 택지	건고525 (‘67.7.25)	노선 단축
기정	소로	3	251	6	국지 도로	219	조촌동 739-22 대로1-4	조촌동 740-17 중로3-7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3	251	6	국지 도로	219	조촌동 739-22 대로1-4	조촌동 740-17 중로3-7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가각 변경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소로 2-1120	· 노선 신설 - L=60m, B=8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대로 1-4	대로 1-4	· 일부구간(L=48m)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중로 3-6	중로 3-6	· 일부구간(L=140m) 폭원확장(B=증 6m) · 일부구간(L=110m)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중로 3-7	중로 3-7	· 노선단축 - L=690m→563m (감 127m)	· 공동주택용지 편입	
소로 3-251	소로 3-251	· 가각변경	· 공동주택용지 편입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	1BL	42,383.8	1-①	조촌동 739-6번지 일원	40,430.3	공동주택용지
			1-②	조촌동 739-10번지 일원	16.0	도로용지 (현황도로 정비)
			1-③	조촌동 739-54번지 일원	191.6	
			1-④	조촌동 739-1번지 일원	1,263.9	도로용지 (대로1-4/중로3-6)
			1-⑤	조촌동 122-3번지 일원	482.0	도로용지 (소로2-112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60%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4)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신설 및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폭 - 소로2-1120호선 신설(L=60m, B=8m) - 대로1-4호선 일부구간(L=48m) 확폭개설 : B=중 3m - 중로3-6호선 주출입구 구간(L=140m) 확폭개설 : B=중 6m - 중로3-6호선 부출입구 구간(L=110m) 확폭개설 : B=중 3m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421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권에 대한 조사권등)에 따라 사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2. 3. 3.

군 산 시 장



### 1. 토지출입통지 사항

- 가. 사 업 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다. 출 입 구 역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일원 (※붙임참고)
- 라. 출 입 기 간 : 2022. 3. 7. ~ 사업종료시까지
- 마. 출 입 목 적 : 측량, 토지·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
- 바.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 2. 공고기간 및 장소

- 가. 공고기간 : 2022. 3. 3. ~ 2022. 4. 4.
- 나.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개별통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및 군산시 건설과(☎063-454-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	읍·면·동	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군산	성산	둔덕	210-1		답	101	28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07-10	조○열	
2	군산	성산	둔덕	211		전	1,123	851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40	양○철	
3	군산	성산	둔덕	212-1		답	2,278	1,115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810-0	정○수	
4	군산	성산	둔덕	212-2		답	1,457	119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0	전○자	
5	군산	성산	둔덕	233-5		수	231	13		국(환경부)	
6	군산	성산	둔덕	233-3		수	633	240		국(환경부)	
7	군산	성산	둔덕	산92-1		구	491	158		군산시	
8	군산	성산	둔덕	산92		임	20,335	80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120	남원○씨 허○파구 석○종중	
9	군산	성산	둔덕	249-4		구	154	154		군산시	
10	군산	성산	둔덕	249-1		답	1840	1,088	충청북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30, 엘지니꼬아파트 100동 400호	신○란	



[붙임]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	읍·면·동	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1	군산	성산	둔덕	249-2		답	572	255	충청북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3○, 엘지니꼬아파트 10○동 40○호	신○란	
12	군산	성산	둔덕	250		답	2,797	634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5○	양○영	
13	군산	성산	둔덕	283-4		답	2,053	1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	석○문	
14	군산	성산	둔덕	283-10		답	749	348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	석○문	
15	군산	성산	둔덕	283-14		수	102	102		국(환경부)	
16	군산	성산	둔덕	283-3		답	853	55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	석○문	
17	군산	성산	둔덕	281-4		수	50	50		국(환경부)	
18	군산	성산	둔덕	283-12		수	63	63		국(환경부)	
19	군산	성산	둔덕	283-11		수	7	2		국(환경부)	
20	군산	성산	둔덕	281-5		수	228	136		국(환경부)	

[붙임]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	읍·면·동	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21	군산	성산	둔덕	524		도	2,529	360		국(농림축산 식품부)	
22	군산	성산	둔덕	282-8		수	140	70		국(환경부)	
23	군산	성산	둔덕	282-3		전	217	50	군산시 남수송2길 10 (수송동)	양○철	
24	군산	성산	둔덕	282-2		답	167	86	군산시 남수송2길 10 (수송동)	양○철	
25	군산	성산	둔덕	283-15		답	1,323	64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0-0	이○희	
26	군산	성산	둔덕	279-2		도	109	3		국(국토교통 부)	
27	군산	성산	둔덕	279-6		답	58	1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250	박○규	
28	군산	성산	둔덕	234-2		답	522	175	군산시 남수송2길 10 (수송동)	양○철	
29	군산	성산	둔덕	525		구	31,318	251		국(농림축산 식품부)	
30	군산	성산	둔덕	233-2		답	459	459	군산시 남수송2길 10 (수송동)	양○철	

[붙임]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 출입토지구역 세목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	읍·면·동	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31	군산	성산	둔덕	233-1		유	1,881	1,221		국(농림축산 식품부)	
32	군산	성산	둔덕	246		대	1,209	43	군산시 동신영길 70 (신영동)	김○숙	
33	군산	성산	둔덕	246-3		수	514	184		국(환경부)	
34	군산	성산	둔덕	246-4		수	146	146		국(환경부)	
35	군산	성산	둔덕	250-2		수	186	18		국(환경부)	
36	군산	성산	둔덕	283-5		대	259	259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0-0	석○문	
37	군산	성산	둔덕	283-13		수	104	104		국(환경부)	
38	군산	성산	둔덕	279-3		도	1,278	3		전라북도	

군산시 공고 제2022-422호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사업 1단계4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117(2021.7.30.)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1단계4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녹지, 광장) 1단계 4차 조성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3,423㎡(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퍼스트, (주)디오션시티투

5. 사업기간 : 2021. 9. 6. ~ 2021. 12. 30.

6. 사용 또는 수용 토지조서

가. 중로 2-14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5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2	조촌동	2-101	장	1,820	99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43,997	2,585						

나. 중로 3-75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2	조촌동	2-101	장	1,820	82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43,997	838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2-423호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2단계3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121(2021. 8. 6.)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3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 3차 조성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1,822㎡(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퍼스트,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기간 : 2021. 9. 6. ~ 2021.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중로 2-142

일련 번호	토 지 소 개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8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합 계				42,177	1,822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 2022 - 462호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3.

군 산 시 장



### 1. 목 적

군산시 조촌동 금빛초등학교, 가람유치원의 개교(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03. 03. ~ 2021. 03. 21.(18일)

### 5.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03. 03. ~ 2021. 03. 21.(18일)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다. 접수처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3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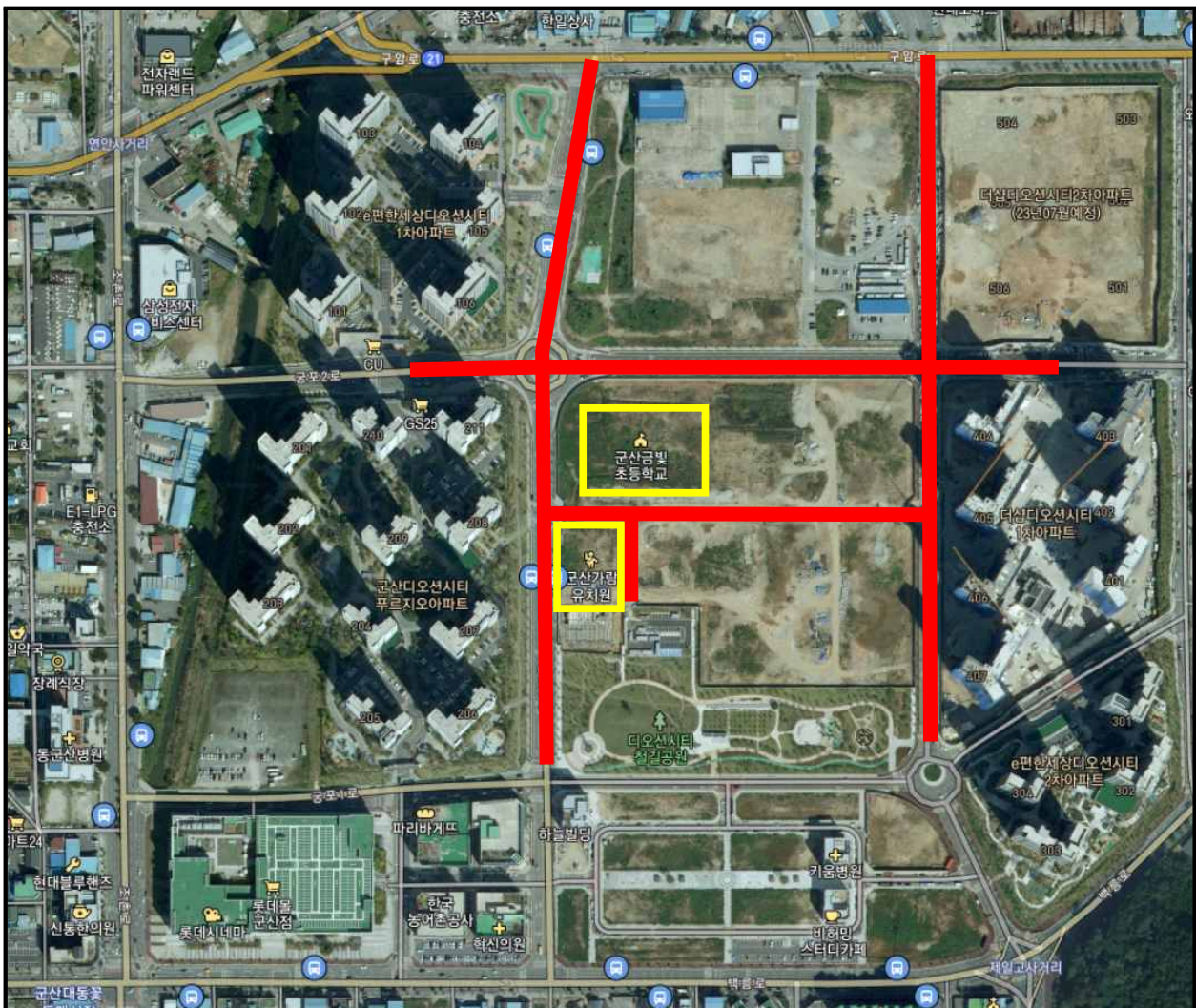
라. 보내실 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6.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조촌동 금빛초등학교, 가람유치원]





군산시 공고 제2022 - 518호

##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3월 8일

군 산 시 장

